

[]

(100 - 809)

80 (2가) 2

2014.04.14	2489253
------------	---------

	2011	
1) 4	가	가
	가	가
2) 22	가	가
	가	가
3) 25	가	가
4) 16	가	(1)
5) 17	19	가 / /
6) 18	2	가
7) 24		, 가가
8) 25	2	
9) 35		(/)
:	9 1	가

2014.04.24 09	
---------------	--

	가 : ()
--	---------

--	--	--

	0	0	0
--	---	---	---

	() []
--	---------

()	가 : ()
-----	---------

		/	
		/	
		/	
		/	
	- 13350(2014.04.24)		
	(427 - 700)	47	()
	02 - 2110 - 3309 (:)		kjk@moj.go.kr

1. ,

가. ()

8

2. (), () ()

3. 가가

4. 가 「

11 5 18 1 18

30

5. 90

6. 10

7. ,

정보공개답변서

강성준님께

안녕하세요? 법무부의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서(접수번호 2489253)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관련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로,

1. 동법 제4조에 따른 검사 청구 건수, 법원 선고 및 확정 건수, 현재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 수 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회 기준 연도 (누계)	검사 치료명령 청구	법원 판결(1심 기준)			대상자 수
		치료명령 판결	청구기각	계류	
2012. 12.	7	-	1	6	-
2013. 12.	31	11	15	5	-
2014. 3.	32	12	15	5	-

※ 법원 인용 12건 : 확정 7건, 재판진행중 5건 ('14. 3. 31. 기준)

※ 법원 판결 확정 후 징역형을 먼저 집행하므로 현재 판결 선고에 의한 약물치료 집행 대상자는 없음

2. 동법 제22조는 형 집행 중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가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동의한 수형자는 없습니다.

3. 동법 제25조에 따른 가종료자 등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 명령을 부과한 건수는 2012년 1건, 2013년 2건, 2014년 현재까지 3건으로 총 6건, 감정 후 치료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건수는 2013년 1건, 2014년 현재까지 1건(1건 감정 중)으로 총 2건,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의 수는 4명이고, 2명은 약물치료 대기 중입니다.

4. 동법 제16조(치료기간 연장), 제17조(가해제 신청), 제19조(가해제 취소), 제18조제2항(가해제 심사)에 해당하는 건수는 없습니다.

5. 동법 제24조에 따라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가 동의에 의해 치료명령을 집행할 경우,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 동의에 의해 약물치료를 집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합니다.

현재 동의에 의한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는 없습니다.

6. 동법 제25조제2항과 관련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감정의뢰

건수는 2012년 1건, 2013년 3건, 2014년 현재까지 5건으로 총 9건입니다.

7. 동법 제35조 각항별에 해당하는 건수는 없습니다

만약 답변 내용이 부족하였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법무부 보호관찰과 정경아 02-2110-3837